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경찰청의 정책역량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61명(경찰청 - 경사 1명, 순경 12명, 6급 2명 / 소속 기관 - 총경 2명, 경정 28명, 경감 65명, 경위 51명, 경사 84명, 경장 210명, 순경 901명, 5급 1명, 6급 28명, 7급 127명, 8급 259명, 9급 190명)을 증원하고 증원인력 일부를 활용하여 울산북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증원인력을 반영하고,

의경감축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를 기동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찰서 신설 및 청사이전에 따른 경찰서별 관할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하부조직의 사무(교통국 내 사무 조정, 악대업무 이관, 전화민원 상담업무 추가) 및 일부 직렬을 변경하며, 지방청 간 재배치 내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화민원 상담업무

제3조의2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제8조의 제목 “(생활안전국에 두는 과)”를 “(생활안전국에 두는 보좌기관 및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국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여성안전기획관으로 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지도

제11조의 제목 “(정보국에 두는 과)”를 “(정보국에 두는 보좌기관 및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국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심의관으로 하며,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3조제4항 중 “정부세종청사경비대의 대장”을 “기동단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주사”를 “통계주사”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2의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의 대전광역시의 대전동부경찰서의 위치란 중 “계족로 670”을 “충무로 222”로 하고, 관할구역란 “동구, 대덕구 일부(계족로 670)”를 “동구”로 하며, 같은 표 대전대덕경찰서의 위치란 중 “대덕대로1417번길 11”을 “계족로 670”으로 하고, 관할구역란 “대덕구 일부(계족로 670은 제외한다)”를 “대덕구”로 하며, 같은 표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의 울산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구, 북구 중 가대동, 달천동, 매곡동, 명촌동, 상안동, 송정동, 시례동, 신천동, 연암동, 중산동, 진장동, 창평동, 천곡동, 호계동, 화봉동, 효문동”을 “중구”로 하고, 울산동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동구, 북구 중 구유동, 당사동, 대안동, 무룡동, 산하동, 신명동, 신현동, 양정동, 어물동, 염포동, 정자동”을 “동구”로 하며, 울산동부경찰서란 다음에 울산북부경찰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북부 경 찰 서	북 구 화동로 67	북구
---------------	---------------	----

별표 2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남양주”를 “남양주 남부”로 하고,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양주시 금곡동, 양정동(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호평동, 지금동, 수석동, 다산동, 도농동, 평내동, 화도읍, 와부읍, 수동면, 조안면

별표 2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남양주남부경찰서란 다음에 남양주북부 경찰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양주북부 경 찰 서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별내면, 퇴계원읍
----------------	---------------------------	------------------------------------

별표 3의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울주경찰서”를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북부 · 울산울주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기도북부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 · 파주경찰서”를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남부 · 남양주북부 · 파주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3의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울주경찰서”를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북부 · 울산울주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기도북부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 · 파주 · 동두천 · 구리 · 포천 · 양주경찰서”를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남부 · 남양주북부 · 파주 · 동두천 · 구리 · 포천 · 양주경찰서”로

한다.

별표 7의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울주경찰서”를 “울산중부 · 울산남부 · 울산동부 · 울산북부 · 울산울주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기도북부 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 · 파주경찰서”를 “의정부 · 고양 ·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남부 · 남양주북부 · 파주경찰서”로 한다.

별표 8 총계 “1,853”을 “1,86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50”를 “1,163”으로 하고, 경사 “174”를 “175”로 하며, 순경 “12”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703”을 “705”로 하고, 행정주사 “11”을 “10”으로 하며, 통계주사 “1”, 시설주사 “2”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8의2 총계 “1,933”을 “1,9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50”를 “1,163”으로 하고, 경사 “174”를 “175”로 하며, 순경 “12”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783”을 “785”로 하고, 행정주사 “11”을 “10”으로 하며, 통계주사 “1”, 시설주사 “2”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9 계 “126,866”를 “128,81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6,825”를 “128,771”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3,719”를 “125,060”으로 하고, 총경 “502”를 “504”로 하며, 경정 “2,610”을 “2,638”로 하고, 경감 “9,126”을 “9,191”로 하며, 경위 “15,252”를 “15,303”으로 하고, 경사 “25,483”을 “25,567”로 하며, 경장 “31,922”를 “32,132”로 하고, 순경 “38,741”을 “39,642”로 한다. 일반직 계 “3,084”을

“3,689”로 하고,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 “49”을 “54”으로 하며, 공업주사·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10”으로 하며, 시설주사·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시설주사·농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3”을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0”을 “39”로 하고,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을 “42”로 한다. 행정주사보 “258”을 “316”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5”를 “30”으로 하며,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38”을 “74”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9”를 “56”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2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5”로 하며, 공업주사보 “21”을 “17”로 한다. 행정서기 “792”를 “969”로 하며, 시설서기 “8”을 “30”로 하고, 공업서기 “95”를 “86”으로 하며, 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하고,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을 삭제하며, 공업서기·시설서기·농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13”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을 “29”로 하며,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0”을 “78”로 하고,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8”을 “181”로 한다. 행정서기보 “139”를 “271”로 하고, 시설서기보 “2”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4”를 “21”로 하고,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9”를 “73”으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를 “121”로 한다.

별표 9의2 총계 “127,695”를 “129,64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7,654”를 “129,600”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3,719”를 “125,060”으로 하고, 총경 “502”를 “504”로 하며, 경정 “2,610”을 “2,638”로 하고, 경감 “9,126”을 “9,191”로 하며, 경위 “15,252”를 “15,303”으로 하고, 경사 “25,483”을 “25,567”로 하며, 경장 “31,922”를 “32,132”로 하고, 순경 “38,741”을 “39,642”로 하며, 일반직 계 “3,913”을 “4,518”로 한다.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 “91”을 “96”으로 하며, 공업주사·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10”으로 하며, 시설주사·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시설주사·농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3”을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0”을 “39”로 하고,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을 “42”로 한다. 행정주사보 “311”을 “369”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5”를 “30”으로 하며,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38”을 “74”로 하고, 시설주사보 “1”을 “22”로 하며,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9”를 “5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5”로 하며, 공업주사보 “70”을 “66”으로 한다. 행정서기 “1,096”을 “1,273”으로 하고, 공업서기 “96”을 “86”로 하며, 시설서기 “24”를 “46”으로 하고, 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하며,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시설서기·농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13”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1”을 “29”로 하고,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0”을 “78”로 하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8”을 “181”로 한다. 행정서기보 “163”을 “295”로 하고, 시설서기보 “6”을 “4”로 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4”를 “21”로 하고,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9”를 “73”으로 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를 “121”로 한다.

별표 9의4 제2호에 21)부터 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과학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138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2)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 (지방경찰청)	420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4명, 경사 47명, 경장 72명, 순경 38명, 7급 37명, 8급 125명, 9급 9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3) 지역치안 업무 (지방경찰청)	366명 (경사 35명, 경장 59명, 순경 126명, 6급 5명, 7급 27명, 8급 67명, 9급 4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4)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 (지방경찰청)	40명 (경장 4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5)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방경찰청)	45명 (7급 21명, 8급 2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6)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지방경찰청)	68명 (경장 36명, 순경 3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울산지방경찰청에 관한 사항(울산북부경찰서 신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관한 사항(남양주북부경찰서 신설)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생략)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5. ~ 7. (생략)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② (생략)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④·⑤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화민원 상담업무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② (생략)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생략) ④ ~ ⑦ (생략)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신설> ① ~ ⑤ (생략) ⑥·⑦ (생략) 제9조의3(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략)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2.·3. (생략)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신설>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보좌기관 및 과)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국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여성안전기획관으로 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지도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국에 두는 보좌기관 및 과)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
---	--

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별표 9의2의 정원 중 829명(행정주사 42명, 행정주사보 53명, 공업주사보 49명, 시설주사보 1명, 간호주사보 1명, 행정서기 304명, 시설서기 16명, 전산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317명, 위생서기보 14명, 공업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 7퍼센트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53</u>	<u>1,868</u>	+15
경찰공무원계	<u>1,150</u>	<u>1,163</u>	+13
·	·	·	
·	·	·	
경사	<u>174</u>	<u>175</u>	+1
·	·	·	
순경	<신 설>	<u>12</u>	+12
일 반 직 계	<u>703</u>	<u>705</u>	+2
행정주사	<u>11</u>	<u>10</u>	-1
통계주사	<신 설>	<u>1</u>	+1
시설주사	<신 설>	<u>2</u>	+2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33</u>	<u>1,948</u>	+15
경찰공무원계	<u>1,150</u>	<u>1,163</u>	+13
·	·	·	
·	·	·	
경사	<u>174</u>	<u>175</u>	+1
·	·	·	
순경	<u><신 설></u>	<u>12</u>	+12
일반직계	<u>783</u>	<u>785</u>	+2
행정주사	<u>11</u>	<u>10</u>	-1
통계주사	<u><신 설></u>	<u>1</u>	+1
시설주사	<u><신 설></u>	<u>2</u>	+2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26,866	128,812	+1,94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6,825	128,771	+1,946
경찰공무원 계	123,719	125,060	+1,341
·	·	·	
총경	502	504	+2
경정	2,610	2,638	+28
경감	9,126	9,191	+65
경위	15,252	15,303	+51
경사	25,483	25,567	+84
경장	31,922	32,132	+210
순경	38,741	39,642	+901
·	·	·	
일반직 계	3,084	3,689	+605
·	·	·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7	18	+1
·	·	·	
행정주사	49	54	+5
공업주사·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u><삭제></u>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10	-1
시설주사·환경주사 또는 농업주사	1	<u><삭제></u>	-1
공업주사·시설주사·농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u><신설></u>	3	+3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0	39	+19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	42	+4
·	·	·	
행정주사보	258	316	+58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5	30	+5
·	·	·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38	74	+36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9	56	+7
·	·	·	
시설주사보	<신설>	21	+21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5	+4
공업주사보	21	17	-4
·	·	·	
행정서기	792	969	+177
·	·	·	
시설서기	8	30	+22
공업서기	95	86	-9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삭제>	-1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	<삭제>	-1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농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신설>	13	+13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	29	+7
·	·	·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0	78	+38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8	181	+13
·	·	·	
행정서기보	139	271	+132
·	·	·	
시설서기보	2	<삭제>	-2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4	21	+7
·	·	·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9	73	+44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121	+9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7,695	129,641	+1,94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7,654	129,600	+1,946
경찰공무원 계	123,719	125,060	+1,341
·	·	·	
총경	502	504	+2
경정	2,610	2,638	+28
경감	9,126	9,191	+65
경위	15,252	15,303	+51
경사	25,483	25,567	+84
경장	31,922	32,132	+210
순경	38,741	39,642	+901
·	·	·	
일반직 계	3,913	4,518	+605
·	·	·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7	18	+1
·	·	·	
행정주사	91	96	+5
공업주사·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삭제>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10	-1
시설주사·환경주사 또는 공업주사	1	<삭제>	-1
공업주사·시설주사·농업주사 또는 환경주사	<신설>	3	+3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0	39	+19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	42	+4
·	·	·	
행정주사보	311	369	+58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5	30	+5
·	·	·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38	74	+36
·	·	·	
시설주사보	1	22	+21
·	·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9	56	+7
·	·	·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5	+4
공업주사보	70	66	-4
·	·	·	
행정서기	1,096	1,273	+177
·	·	·	
공업서기	96	86	-10
시설서기	24	46	+22
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삭제>	-1
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	<삭제>	-1
공업서기·시설서기·농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신설>	13	+13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1	29	+8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0	78	+38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8	181	+13
·	·	·	
행정서기보	163	295	+132
·	·	·	
시설서기보	6	4	-2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4	21	+7
·	·	·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9	73	+44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121	+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